

의안번호	2200493
의 퇴 인	이병진의원
회 답 일	2024. 6. 24.
추계번호	24B0636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10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0억원(연평균 10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5	2026	2027	2029	합계	연평균
창업지원 등 (안 제26조의2 신설)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1,0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6조의2 신설(창업지원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u>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음(제1항)</u> 1. <u>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u> 2. <u>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u> 3. <u>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u>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26조의2제1항제1호·제3호 신설(창업지원 등)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해양치유 관련 기술 등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제1항제1호) － 창업에 필요한 전문 기술 및 법률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제1항제3호)
	안 제26조의2제1항제2호 신설(창업지원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치유 관련 제품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비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제1항제2호) － 현 시점에서는 해양치유 관련 제품 사업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대상과 지원 규모를 예측하기가 곤란하여 합리적인 추계에 한계가 있음

자료: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해양치유)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등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¹⁾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 해양수산부는 2021년 현행법 시행²⁾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2026)」을 수립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중
 - 해양치유자원 활용 및 서비스 제공의 기반 마련
 - 해양치유산업의 육성과 해양치유문화의 확산 등
- ※ [참고자료 1]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참고

[표 2]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관련 사업 현황: 2021~2024년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1	2022	2023	2024
해양치유자원 효능 검증 및 활용 기술개발(R&D) -해양치유자원 효능/ 표준화 및 안전 관리기술 개발	—	2,405	2,847	1,190
해양관광육성(2034-310) 중 내역사업				
-해양치유시범지구조성 (완도, 태안, 경남고성, 울진 해양치유센터)	17,300	9,500	13,120	10,565
-해양치유산업활성화(육성방안마련)	300	—	—	—
-해양치유산업활성화 지원	—	500	700	700
▶ 해양치유자원조사	—	500	500	500
▶ 해양치유통계구축	—	—	200	200
농림해양기반 스마트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확산 (R&D)(다부처사업)	900	1,200	1,445	431
-해양치유자원의 기초성분 분석 및 자원별 활용기술 개발	225	300	375	107.75
-최적환경 모델 적용 해양치유센터 운영 시스템 개발	225	300	390	107.75
-해양치유 시설·장비·서비스의 품질관리 및 인증체계 구축 기술개발	225	300	355	107.75
-ICT·IoT·VR 기술활용 해양치유 상용화 기술 개발	225	300	325	107.7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및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II-1)」, 2024.1.를 바탕으로 재작성

-
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
 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4. ~ 5. (생략)
- 2) 2020년 1월 9일, 국회는 제37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가결하였다(법률 제17064호, 공포 2020.2.18., 시행 2021.2.19.)

나. 창업지원 등—해양치유 연구개발 성과의 제공, 창업 컨설팅 지원(안 제26조의2제1항제1·3호 신설)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창업지원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본 추계에서는 해양치유 창업 및 컨설팅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추계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양치유 창업 및 컨설팅 지원에 단년도 기준으로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³⁾

－ (해양치유서비스 창업지원) 8억원 (=100백만원 × 8개 기관)

－ (해양치유기업 컨설팅) 2억원 (=25백만원 × 8개 기관)

※ [참고자료 2] 해양치유서비스 개발·창업 지원 참고

－ 이때, 추계기간 동안 해양치유 관련 창업 및 컨설팅 지원금액이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표 3] 해양치유와 관련한 창업 또는 기술의 사업화 예시 및 소요비용(단년도)

(단위: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소요비용
해양치유서비스 창업 지원	• 해양치유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해양치유제품·서비스 등 우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한 창업 자금 지원	800 (100백만원 × 8개 기관)
해양치유기업 컨설팅	• 해양치유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 세무·회계·법률, 홍보·마케팅 등 • 해양치유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아이디어 기초 상담-고도화-권리화) 및 교육 지원	200 (25백만원 × 8개 기관)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3)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 관련 산업은 성장 초기단계로 해양치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

- 추계 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치유서비스 창업 및 해양치유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경우,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 간 총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4] 해양치유서비스 창업 및 컨설팅 지원 비용추계: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해양치유서비스 창업 지원	800	800	800	800	800	4,000
해양치유기업 컨설팅	200	200	200	200	200	1,0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5,000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재량규정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 일정 예산의 편성을 가정하고 추계한 것으로, 향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조성 목적

- 연안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육성 중인 해양치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해 우수한 해양치유자원을 갖춘 곳에 건강관리와 휴양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공간 조성

* (근거)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2022~026)

□ 그간의 추진 성과

- 4개 해양치유센터의 적기 완공*을 통해 서비스 제공 거점을 조성하고,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 추진

* 완도('23 준공 완료), 태안('20~'24), 울진('20~'25), 경남 고성('20~'25)

- 제주해양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10억원이 '24년 정부안 반영(국비50%) * 제주는 균형특별회계로 추진

□ 해양치유센터 분포도



참고 1

경남 고성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경상남도 고성군 하일면 송천리 108번지 일원(자란도)
- (규모) 연면적 6,080.95㎡(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면적 19,713㎡
- (내용) 기업체 종사자의 스트레스·피로 회복으로 특화, 해양치유 아카데미를 활용하여 전문인력 교육 거점으로 육성
 - 대규모 산업단지 접근성(1시간 이내), 수려한 해양경관 및 청정 대기 환경(스트레스·피로 회복) 활용
- (총사업비 / 사업기간) 309억원 / '20년 ~ '25년(6년)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경상남도 고성군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R&D 협력지자체 선정('17.10)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1.6.)
- 실시설계 용역 완료('22.10.)
-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 완료('22.10)
- 해양치유센터 건축공사 계약('22.12)
- 공사 착공: '23.10 / 준공: '25(잠정)

□ 조감도 및 위치도



참고 2

경북 울진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384번지 일원
- (규모) 연면적 6,553.00㎡(지하 1층, 지상 3층) / 부지면적 42,408㎡
- (내용) 온천지구 및 산림자원과 연계, **해양-온천-산림 치유와 연계한 STAY-Healing, 피부·호흡기 질환 및 스트레스 완화** 특화
 - 온천지구, 산림 등 다양한 자연휴양자원 및 마리나·해양과학교육관 등 해양관광자원 연계(복합·체류형 치유관광)
- (총사업비 / 사업기간) 301억원 / '20년 ~ '25년(6년)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경상북도 울진군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R&D 협력지자체 선정('17.10)
- '20년 실시설계비 예산 확보('19.12)
-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21.4), 실시설계 완료('23.3)
- 실시설계 총사업비 조정 완료('23.6)
- 감리비 증액 관련 기재부 총사업비 협의 중('24.5)
- 공사착공: '24년 중, 준공: '25(잠정)

□ 조감도 및 위치도



참고 3

충남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남면 달산리(달산포 해변 일원)
- (규모) 연면적 8,543m²(지하 1층 지상 2층) / 부지면적 37,993m²
- (내용) 주말·가족 단위 방문객 대상 **FAST-Healing, 피부미용 및 근·골격계 질환 완화**로 특화(대표자원: 머드, 소금 등)
 - 수도권 접근성(2시간 이내), 서핑·카약 등 다양한 해양레저 콘텐츠 및 해수욕장·리조트 등 휴양 인프라 보유(가족 휴양)
- (총사업비 / 사업기간) 308억원 / '20년 ~ '24년(5년)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충청남도 태안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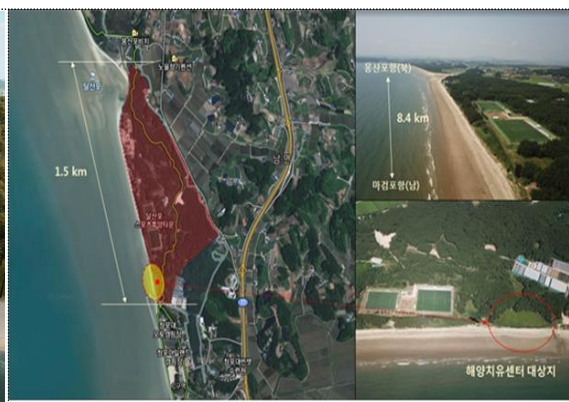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해양치유자원 실용화 R&D 협력지자체 선정('17.10)
-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착수('20.12.)
- 해양치유센터 건축 설계용역 완료('21.10.)
- 태안 해양치유센터 공사 착공('22.3.)
- 공사 준공 '24.下, 해양치유센터 정식 개관 '25.上(잠정)

□ 조감도 및 위치도



[조감도]



[위치도]

참고 4

제주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 사업 개요

- (위치)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2번지 등 5필지(체육공원용지)(잠정)
- (규모) 연면적 6,300㎡(1개 동, 지상 4층) / 부지면적 32,004㎡(잠정)
- (내용) 제주지역에 급증하는 **해양관광·레저 수요 대응** 및 치유센터 중심 **휴양·관광·의료** 등 관련 산업육성, **지역민 일자리 창출** 등
 - 제주는 매년 13,889천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용암해수·화산송이·검은모래 등의 특화자원 활용이 가능하여 해양치유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총사업비/사업기간) 495억원(기재부 총사업비 협의조정 필요) / '24년 ~ '28년(5년)
 - * 토지(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재산) 공시지가 15억 원 포함
- (지원형태) 지자체 자본보조(국고 50%, 지방비 50%)
- (시행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4~6단계 중앙 권한이양 소요경비로 국비 240억원(지방비 50% 매칭) 지원 결정 및 '24년 예산 10억원 반영('23.7, 기재부)
- 지방행정 중앙투자심사 재심사('23.11~'24.6, 행안부)
 - * '23년 제4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 결정('23.11)으로, 2024년 2차 심사를 위해 4월말까지 자료 보완 제출 예정
- 총사업비 등록 협의('24.7, 총사업비 협의조정 포함, 기재부)
 -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결과 반영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계약 및 착수 예정(~'24.12)

□ 조감도 및 위치도



[참고자료 2] 해양치유서비스 개발·창업 지원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사업목적

- 해양치유 관련 산업은 성장 초기단계로 해양치유 관련 기업의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 법률 근거

- 「해양치유자원법」 제24조(해양치유 프로그램 개발·보급), 제26조(해양치유 산업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① 해양치유서비스 창업 지원: 800백만원(100백만원 × 8개 기관)

- 해양치유 벤처기업 발굴을 위한 성장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 해양치유제품·서비스 등 우수 아이디어 평가를 통한 창업 자금 지원



② 해양치유기업 컨설팅: 200백만원(25백만원 × 8개 기관)

- 해양치유 창업기업을 위한 전문가 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
 - * 세무·회계·법률, 홍보·마케팅 등
- 해양치유 창업기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아이디어 기초상담-고도화-관리화) 및 교육 지원

□ 기대효과

- 벤처·소기업의 투자유치 역량 부족, 투자자의 이해도 결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해양치유 벤처기업 발굴·지원 등 해양치유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해양치유산업화 기반 마련
- 고품질의 해양치유서비스 제공을 통한 이용자 만족도 제고